시흥시 공고 제2026 -2947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시 흥 시 장

1. 개요

□ 접수기간 : 2026. 11. 16. ~ 2026. 12. 11.

□ 모집대상 (사업자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그 밖의 의무

※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 제한,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기타 준수의무(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기타 준수 의무 중 1개 선택)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수는 1개로 인정

□ 직불금 신청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을 말하며, 이하 '신청단체')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사업 참여를 신청

○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구성 불가

○ 신청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준수의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7.1.1.~ 9.30.까지

□ 준수의무 신청 및 이행계획 작성

○ (준수의무 신청) 기본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신청

- 기본의무는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되, 선택의무 중 어획증명은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신청 단체가 설정한 준수의무에 미참여하는 개별 신청 어선도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필수로 신청 및 이행하여야 함

○ (이행계획 작성) 신청 단체가 제출하는 이행세부계획서는 적합성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 (이행계획 기간) 준수 의무 이행계획은 준수의무 이행 기간(' 27.1.1.~ 9.30.) 이내에서 설정

※ 당해연도 내 직불금 지급 완료를 위해 9.30.까지 준수의무 확인

□ 지급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

※ (우선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내 순위에 포함된 단체를 말하고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예비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외 순위인 단체를 말하고,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구성원) 부적격 발생 시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직불금은 선정 당시의 어선별 지급 예상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어선의 톤수가 변경된 경우) ①선정 당시 보다 증톤했을 경우 선정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②선정 당시 보다 감톤했을 경우 감톤된 톤수 반영하여 지급

※ 어선 대체에 따른 톤수 증가, 신청 시 자격 조건 변경(개인→법인), 개인·법인별 신청 어선 수 변경 등 조건 변경 시에도 당초 선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개인 2척, 6,000만원 지급 예정이었으나 어선 매매로 소유자가 각각 분리·변경되더라도 당초 확정 예산범위인 총 6,000만원 내에서 지급

○ 준수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연중 점검(상시, 집중)하여 최종으로 선정된 신청단체의 구성원에 직불금을 지급

○ 불가피한 사유(침몰,매매,사망 등)없이 선택한 의무를 불이행 시 다음연도 사업 신청 평가 시 감점 **<신설, ’28년부터 적용>**

※ 전년도 선정된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한 경우 1척당 3점 감점, 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 감점

< 주요 확인(안내) 사항 >

① 일반 사항
· 준수의무로 설정한 기본의무, 선택의무(2개 이상)가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기본의무는 단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단체 구성원수의 4/5 이상 참여해야 적합성 평가 시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단체 신청서상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와 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별 이행세부계획서의 동일 여부

② 총허용어획량 준수(기본의무)
· 기본의무는 필수의무로 평가 배점비중이 높고 배점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요건 미충족시 직불금 전액 미지급됨을 고지

③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선택의무)
· 어획증명관리시스템(앱) 가입 여부 확인 필수, 미가입자 신청 불가

④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선택의무)
· 연속하는 날짜로 15일 이상 설정했는지 여부
· 업종별·어종별 법정 조업제한 일자(금어기 등)가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 기간과 겹치는지 여부
·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은 연속되는 날짜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입항기록(조업목적)이 없을 경우에만 의무준수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날짜가 아니거나 15일 미만인 경우 등은 ‘그 밖의 의무’로 신청하도록 안내
· 최소 15일~30일 이상 연속하는 날짜를 설정해야 하며, 법정 조업제한 기간전·후로 휴어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연속하여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금어기 연속 여부에 따라 점수 차등배점

⑤ 그 밖의 의무
· 지침에서 정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그 밖의 의무로 신청하도록 안내
· 그 밖의 의무를 다수 설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선택의무는 1개로 간주되며,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

⑥ 단체 최소 구성원수
· 단체 구성요건인 최소 척수 이상 참여(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의 혼합 구성은 불가하며, 혼합구성 단체는 신청단계에서 제외)

< 연속한 날짜 설정 인정 예시 >

< 자율휴어 >	< 법정 조업제한기간 >	< 자율휴어 >
3.27. ~ 3.31. (5일)	4.1. ~ 4.30.	5.1. ~ 5.10. (10일)

* 자율휴어기간이 법정 조업제한 기간 앞 뒤로 이격되어 있더라도 이 경우에 한하여 자율휴어기간을 연속한 날짜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사업선정 제외대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 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 직불금 제한 내용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지급) 자격 등에 맞고 준수의무를 이행(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준수의무 이행사항 포함)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7.9.30.)까지 이행할 것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7.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1호)에 따른 3단계(정착) 대상 해당

□ 제재부가금의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 단,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가능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2.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여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허가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지급

○ 지급 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

○ 지급 제한
- 개인 :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 : 이행점검 결과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후보단체 :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는 신청단체의 순위에 따라 직불금 지

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
단체서류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지급대상단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신청한 기본 및 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 포함 必 ·**(TAC 참여 단체)** 어선별 할당량 배분 증명서 ·**(자율적 할당량 준수 단체)** 할당량 근거자료
개인서류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개별 어업인의 이행계획 내용이 자신이 속한 지급신청단체의 이행계획과 같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직불제 개인 신청 불가, 단체가 개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제출방법

○ 직불금 신청장소 : 시흥시 해양지원센터[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해양수산과(031-310-2379)로 문의

붙임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2.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table>
<tr><td colspan="2">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td><td colspan="2">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td><td colspan="2">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td></tr>
<tr><td rowspan="2">단체</td><td>단체명</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
연락처</td><td>사무실</td><td colspan="2"></td><td>팩스</td><td></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td></tr>
<tr><td colspan="6">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

2026.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의무 (작성 예시)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6.7~'27.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1) TAC 어종 개수 : '26.7~'27.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TAC 관리 비율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5.7.1~'26.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td><td>참여어선 수</td><td>조업중단 기간</td><td>증빙 자료</td></tr>
<tr><td>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27.6.1 ~ 6.30(30일)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td><td>출입항기록</td></tr>
<tr><td colspan="2" rowspan="2">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td><td>참여어선 수</td><td><이행할 내용, 기간 등></td><td>증빙 자료</td></tr>
<tr><td>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td><td>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td></tr>
<tr><td rowspan="8">그 밖의 의무</td><td colspan="2"><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td><td><이행할 내용, 기간 등></td><td><증빙 자료></td></tr>
<tr><td colspan="2">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근해)총 00톤(척당 00톤)
'27.1.1 ~ 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7.1.1 ~ 9.30</td><td>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td></tr>
<tr><td colspan="2">강화된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7.1.1 ~ 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7.1.1 ~ 9.30</td><td>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td></tr>
<tr><td colspan="2">강화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td><td>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td><td>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td></tr>
<tr><td colspan="2">종자방류</td><td>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7.6</td><td>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td></tr>
<tr><td rowspan="4">기타
준수
의무</td><td>어구보증금제 이행</td><td>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td><td>보증금 지급 현황 등</td></tr>
<tr><td>생분해성 어구 사용</td><td>조기자망, 대게통발 등</td><td>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
(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td></tr>
<tr><td>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td><td>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td><td>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td></tr>
<tr><td>기타준수의무</td><td>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td><td>해당 증빙 자료</td></tr>
</table>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3 참여 어업인 명단(TAC)

OO도	신청자		허가			어선			TAC 할당량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선명	번호	톤수	어종	할당량(톤)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동진*	*0000*	*25.7*	*대문어*	*2,000*

4 참고서식

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참여 구성원수	
사무실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상기 단체는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단체의 참여 구성원 전원은 필수 지급요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받을 때 확인 및 증빙서류로서 개인(업체) 간 사매매 자료가 아닌 (수협) 위판기록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인(업체)간 사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인) *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되며, 적합성 평가 관련으로, 수산정보통합시스템(어선 조업보고 정보, 어선 위탁판매 정보)에서 요청한 수협 위판기록 외 추가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수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 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허가(면허,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그 외(「상법」 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 "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 "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의무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6.7~'27.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7.2.1.~'27.2.28.(28일)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 가입예정 (접수불가) ■ 가입완료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ID: MOF123123)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7.1.1~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7.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강화된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7.1.1~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7.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강화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 금지 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7.5월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하여 제출